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국가보훈부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 국가보훈부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시10분)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기한 기획조정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경우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공석이고 권대영 사무처장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따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은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혜 대상은 10.1만 명이고요 추경안은 0.7조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을 보시면—우측의 굵은 글씨체로 돼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첫 번째, 지원 대상 기간은 종전 24년 11월까지였는데 25년 6월까지고 저소득층—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합니다—90% 일괄 감면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입니다.

부대의견 중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행정적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라는 점은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 점은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여 첫 번째 부대의견을 네 번째 부대의견에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길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의견은 결국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통합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훈 위원** 지금 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7000억?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2000억이 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계속 가동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원 대상자의 선별이라든지 등등 아까 전체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그런 제언을 좀 유념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그간에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위원 가리지 않고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집행할 때 대상자 선별과 어떤 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늘 중요한 게 기준이잖아요. 어떤 기준 시점, 기준 금액, 기준 자격,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준에 있던 게 60~80%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 차치하고라도 개선안은 감면율 10% 더 올려서 90% 정도 감면을 시키고 최대 20년 분할상환 이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안 갚아도

될 정도로 완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이렇게 90%로 늘리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을 더 늘린 이유가, 일단 설명부터 먼저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근거로 80%에서 90%로 10%를 올렸는지 그것하고 왜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간 더 늘렸는지,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기준점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0%로 감면 폭을 늘린 분들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가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연체로 인한 고통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시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9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소득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기간을 20년으로 확대를 한 건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기준에는 왜 안 그랬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기존 정부에서는 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생각을 그때도 갖고 계셨으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저희가 지금 계속 내수 침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柳榮夏 위원 내수 침체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다 보니 저희가 저소득층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왜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생겼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들 때 금융위 독단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국정기획위원회에 불려 가 가지고 방안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방안을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저희가 만든 겁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부 때 이 좋은 정책 먼저 했으면 선거 때 표도 많이 얻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없던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점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극화가 불과 5개월 만에 갑자기 벌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2024년 11월까지는 양극화가 별로 눈에 안 띄다가 2024년 11월부터 5월까지 양극화가 갑자기 심화됐어요, 이 7000억을 투자할 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관료들보고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눕지 마시고.

이것 전부 무슨 돈이에요? 세금이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세금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것 세금 쓰고 나면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요? 국장님의 갚으세요? 제가 갚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마 갚게 될 거예요, 국가부채를.

이것보다 더 해도 되잖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왜 90% 감면해요, 95% 감면하면 되지. 상환도 30년 하면 되잖아요. 아예 탕감시키면 되지. 기준을 10% 올린 이유를 설명하세요. 10% 올린 이유,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80%대에서 90%, 10% 차이인데 왜 10% 올렸어요? 이왕 올리는 거 95%까지 올리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제가 예전에 서민과장을 할 때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이렇게, 그때 90% 제도를 한번 만든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전에 없던 제도를 중간에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변경을 주는 거고요.

이번도 사실은 과거의 국민행복기금 제도 정도의 수준에서 처음에 설계가 됐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한 것이지……

○**柳榮夏 위원** 그 인식의 변화가 왜 생겼어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그것은 통상 아시겠지만 추경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변화를 좀 줘서 좀 더 보호할 데가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柳榮夏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런 걸 올렸으면 됐잖아요. 본예산 때 올려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 여기 누가 반대했겠어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저희가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 못 한 건 저희 불찰이지만 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제도를……

○**柳榮夏 위원**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들었냐고.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추경 얘기가 나왔고 뭔가 저희가 예산이 들어오면 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저 자체도 부끄럽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 못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러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최소한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년, 3년 전의 것도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만에 확 인식이 바뀌어 갖고 7000억을 더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애Hub심이 생겼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셔야지요. 설계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90%만 해요? 앞으로 95% 하세요. 아니면 아예 탕감을 시키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하십시오,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저는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말에 있었던 특수한 정치 상황 그것이 서민경제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미쳤던 그 영향이

런 것들을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으로 인한 후과 이것이 서민경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이걸 결코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정권의 관세 충격 이것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것이 약자한테 먼저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면서 누적되었던 이런 상황과 앞의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올 충격에 대해서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11월까지 올해 예산을 만들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그런 측면들에서 꽤 달라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지만 일단 7000억 원은 수용을 하고 그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강민국 위원 안 내용을 유영하·이양수 위원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부 원안에 더하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데 신규 사업이고요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4000억입니다.

오른쪽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개요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별도 SPC고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인데 16.4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상 요건 충족 채권을 일괄매입해서 소득·재산 심사 후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소각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범위 내, 재산의 경우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소요 재원은 총 8000 억인데 매입 대상 규모 16.4조 원을 매입가율 5%로 계산한 금액이고 재원 조성은 정부 출자금 4000억, 금융권 협조 4000억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

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추경 대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추경안 전액 미반영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5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의 경우에도 해당 채권을 평균 매입가율 5%로 매입하기 위해 예산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4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출연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권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 요건, 도박·유흥 채무 등 지원 제외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경우에도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과 새출발기금 사업 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관계 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주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하고 채권 규모, 재원 조성이 좀 다른데요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원금 전액 감면을 위하여 예산 1246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무담보 신용 채무, 10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에 대해서 정부 재정 30%를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대의견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정 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원조달계획도 은행권 협조 4000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경안을 전액 미반영하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 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재산 심사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채무조정 비이클(vehicle)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성실상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도 이자 환급, 만기 연장 등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협조 4000억 원 규모 문제가 있는데요 금융권하고 초동적인 협의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금융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의 표현과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확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잡음 없이 또 재정에서도 일정 부분이 분담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도 원만하게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5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 중에서 연대보증채권 규모가 1조 6843억 원인데 해당 채권도 예산 800억 원을 받아서 채무조정을 추진하자고 하는,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도 포함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연대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7년 이상 연체 그다음에 5000만 원 대상에 대해서 주채무가 삭제되는 경우에 일부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25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 같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이번에 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캠코가 정기적으로 소각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김에 태워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은 적극적으로 소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에 협약기관 범위 그다음에 구체적인 요건, 도박·유홍 채무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3개월 내에, 9월 말 3분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도 제출하고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 중 처리되지 않은 대상 채권 역시 요건이 되는 경우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소위원장 이정문** 잠깐만요. 그러면 그 위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제일 위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부동의 여부를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러면 답변드리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대상 연체 기간 연도하고 새출발기금 사업 간의 공백 기간에 있는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산형 채무조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간극지대의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대부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지금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 채무 중에서 공공기관 채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대부업체 채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업체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매입 기구에 매각할 수 있도록, 배드뱅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을 최대한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 동의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신정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득 정보나 그다음에 금융 정보, 금융재산 정보 이외의 정보는 캠코가 협행 캠코법을 통해서도 관계 부처, 관계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법을 이용해서 금융재산 정보까지도 신속하게 받아서 신속한 일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 없는 일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 주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희가 초기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기준에 있는 비이클들을 통해 가지고 매입 기구를 추진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채무조정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절차, 연락이 닿지 않는 채무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에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매각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캠코 및 캠코 출·투자 회사에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매각된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매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허들을 감안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채무조정 절차 트래픽과 채무자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서나 혹은 여러 가지 채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으되 주된 매입 기구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채무자의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 기준을 현실화해서 철저히 심사한다는 얘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원금 전액 감면을 위한 신

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가칭 위기극복기금을 법정 기금으로 마련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신규 예산을 반영해서 채무 원금 전액 감면을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더군다나 대부업체에 매각되어 있는 채권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실제 많이 가 있지도 않겠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에서 대부업체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얻어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매입가율 30%를 적용하더라도 매입가율과 관련된 분쟁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채무, 5000만 원 미만 7년 이상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하는 데에도 지연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및 소각 그다음에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서 상환을 확보받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 또는 채권 탕감 프로젝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산 4000억을 배정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갚을 돈을 최대한 줄여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를 최대한 줄여 주거나 하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러스 개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탕감·소각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정말 지원해 줄 의지가 있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상환기간을 본인과 상의해서 이 정도 기간으로 늘려 주면 나는 천천히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5000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이라도 개별적인 신용정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고 심사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괄 탕감, 일괄 소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나 이 재원 자체는 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5000만 원을 기준 잡은 기준점이 뭐예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한 평균 금액이 한 4600만 원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46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으로 잡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리고 7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대충 범용적으로 한 95%의 채무자들이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柳榮夏 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세금으로 다 탕감을 시켜 주고, 5500만 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당이 안 되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일단은 5000……

○**柳榮夏 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평균치가 4600만 원이었다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400만 원을 누구 마음대로 올려요?

기준점이, 평균이 4600만 원인 것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5500만 원은 기준점이 넘어서 탕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평균 4600만 원 나왔는데 5000만 원으로 400만 원 올린 것은 누가 올렸어요? 누가 그대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柳榮夏 위원** 정부 내부적으로 누가 검토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검토했어요? 여기에 있어요, 검토한 실무자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있습니다. 저부터……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46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5000만 원 만든 이유가?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지는 않고요.

○**柳榮夏 위원** 400만 원 올리면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요? 추계해 봤어요?

평균이 46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평균에서 400만 원 올렸을 때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그 사람들을 탕감시켜 줬을 때 소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듦다고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얼마나 더 늘었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액은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柳榮夏 위원** 아니, 그 금액을 제출을…… 그것도 검토 안 하고 마음대로 올려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것은 아니고요. 2000만 원까지가 가장 명수가 많았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면, 지금 한 4600만 원 되는 채무자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포섭……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정확하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2급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柳榮夏 위원** 국장님,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요? 그렇게 계산해요? 가게에서 물건 살 때 ‘그냥 우수리 가지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나라 예산 다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400만 원을 함부로 올려요? 그 추계도 계산 안 하고 마음대로 올려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아닙니다.

○**柳榮夏 위원** 그 예산 얼마나 더 드는지,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그것 나중에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금융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깥에서는 로또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또.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딱 맞아서 그냥 5000만 원이 탕감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살짝 비껴 나가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연히 줄을 잘못 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줄을 잘 서서 그냥 빚이 5000만 원이 까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줄을 조금 잘못 서 가지고 빚을 지는데 여기에 딱 맞게 빚을 졌으면 되는데 그때는 장사가 잘되고 이 기간을 건너뛰어서 빚진 사람들은 아무 탕감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공평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 원금을 일부 탕감시켜 주거나 이자를 감면시켜 주거나 또는 거치기간을 늘려 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의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빚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 준다? 이것은 앞으로…… 저는 이것 본 예산 반영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 지금 해야지 만약에 본예산에 이걸 반영시킨다 그러면 그때까지 빚 안 갚아요, 사람들. 계속 연체돼서 예산이 더 들어난다고요. 앞으로 누가 빚을 갚겠어요, 이게 선례가 되면? 장기 연체될수록 이익인데 누가 죽어라고 투잡 뛰어 가지고 빚 갚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악착같이 빚을 갚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국장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산 사람하고…… 물론 이 중에는요 코로나도 있었고,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더 피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백분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원금을 탕감시켜 준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지금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렇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금융위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직을 걸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막았어야 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

○柳榮夏 위원 아직 기다리세요. 작년하고 태도가 너무 달라요.

○김현정 위원 여기는 질의시간 정해진 것 없어요? 질의시간 제한 없습니까?

○柳榮夏 위원 제가 일찍 마칠게요, 김 위원님.

○김현정 위원 저희도 질의 좀 해야지요. 10분째 하고 있어요.

○柳榮夏 위원 일찍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은 5000만 원 기준점을 잡은 게…… 제가 차라리 평균 4600만 원 갖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0만 원 올리는 게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400만 원 올리면 거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그게 정말 답답해

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46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을 때 7년 이상 연체 채무 중에서 2000만 원까지가 거의 한 80% 가까이—표로 드리겠습니다—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올리면 거의 한 팔십몇 퍼센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3000만~50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보편적으로 7년 이상 연체한 채무를 들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포섭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임의로 400만 원 올리거나 4000만 원이거나 5000만 원이거나 6000만 원 어디다 설정해도 문제가 생기는, 5100만 원이나 5200만 원이나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뒷부분에, 5000만 원을 근처로 한 부분에서는 대개 밀도가 많지가 않았고 집중적인 채무는 2000~3000까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이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7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다, 이후에 소득·재산 심사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원리금을 전부 탕감해 주는 정책이 흔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장소연재단을 설립해서 2018년에 한 것이 유일했는데 그때는 물론 재정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열심히 고민을 했었고 도덕적 해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루프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했었는데 7년 정도 되면 금융회사들도 이미 상각을 해 가지고 회수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추심을 반복적으로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를…… 지금 사실 90% 가까이 운영하면서도 이분들한테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체부자유분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래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일회성에 그쳐서 탕감을 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재산이 은닉재산이든 뭐든 간에 발견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원리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성을 아주 안 갖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 지금 도덕적 해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추경예산도 편성되어 있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것 얼마지요? 3000억 맞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중기부 예산이라서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3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4000억이니까 큰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채권에 대해서 채무 탕감해 주는, 소각하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채무 탕감으로 인해서 얻는, 신용불량자 돼서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입는 손실하고 이분들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또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을 비교 형량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 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국가경제 전체 측면에서 소각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채무조정 내용을 정교화하면서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13만 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서 일단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소각하고 그다음에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서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있으신 분들은 채무를 상환도록 하면 경제에 소비 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숫자로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한 1900조 넘었는데 그중의 16조 원 규모니까 한 0.8% 되고 지금 한 113만 명 된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3.7%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환산해 보면 한 5%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년 동안 연체했던 채무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김현정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둑어 놔 가지고 경제활동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런 회수 가능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 5%를 주고 매입하는 것 그것을 더 낮출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배드뱅크의 대상이 되는 113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대부업계가 보유한 채권으로 나와요. 맞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각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배드뱅크 사업에 대한 협약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업계는 대부분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업계에서 보유한 관련 부실채권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 6000명 정도가 대부업에 채권이 가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한 2조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협력을, 원활한 채권매입을 SPC가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접촉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이런 매입 기구의 채권 매각에 원활하게 협조해 준다면 등록대부업체 같은 경우들은 자금조달이나 파이낸스나 이런 쪽에…… 지금 저희가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불이면 그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들로부터의 채권매입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위원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 금융기관들도 일정 기간 되면 다 채무 소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신용불량자로 엮여서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을 펼 때 민간 금융기관들이 소각하는 것들 선진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 김현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김남근 위원님.

○ 김남근 위원 전 세계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의 철학은 뭐냐하면 경제효용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7년 정도 빚을 못 갚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어차피 돈을 벌어 봐야 빚 갚는 데 다 쓰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소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게 100만 명, 200만 명, 많게 되면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소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빨리 채무조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용이 높더라, 그런 철학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회생 건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건이 넘고 거기에 거의 준할 정도로 사적 채무조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보수 경제를하시는 분들도 미국의 그런 경제효용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이런 11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소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경제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빨리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이런 제도가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 효용에 대해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정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파산회생제도,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적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업체니 이런 데서 끝까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계속 괴롭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채무자대리인하고 채무조정을 해서 일부라도 받고 채권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캠코 같은 공공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

를 운영해서…… 채무자대리인 이번 예산에도 그래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들을 캠코가 갖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채권까지 좀 넓혀 가지고 활발하게 사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걸 공공이 매입하기 전에 이미 금융기관들하고 채무자대리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적 채무조정이 일어나서 거기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지금 7년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년 이상 되면 이미 채권 회수도 쉽지 않아요. 채권 회수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지 회수도 잘 안 되는 그런 거니까 도덕적 해이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낫다. 가능성의 낮고 빨리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앞서서 김남근 위원님께서 미국 사례 드셔 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채무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미국의 채무조정은 특히 학자금대출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13만 명, 130만 명 정도 되는 대상자들의 채무의 성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개략적으로 파악하신 바나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일단은 신정원의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략적인 규모만 판단했고 지금 감독원의 CPC를 통해 가지고 재차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인 채무의 특성에 대해서 아직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상환능력 자체가 없어서, 빚 자체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파산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분들에게 채무 탕감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앞서서 오전에 계속 질의했듯이 그 채무의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도박 빚, 유흥 빚 이런 얘기도 좀 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이 분들의 채무가 조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섬세하게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채무 탕감 제도를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괜찮았나요? 파악하신 바가 좀 있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저희가 2018년 2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서 장기 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통해 가지고 10년 이상 연체, 10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서 소각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괄매입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받아서 소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9000명 수준의 소각에 불과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 9000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불능에 빠진 분들의 비율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채무 탕감의 효과가 없었던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 것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김서중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장소연재단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의 한 60% 정도가 일단 조정이 됐고요. 나머지 40%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재산이라든가 상환능력이 확인이 돼서 금융기관에 다시 돌리기도 했던……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60%는 어쨌든 지원을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60% 가운데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형태로 다시 한번 빠지게 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 김서중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김재섭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추경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정을 해 주는 채무의 내용도 불분명한 상태고 채무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학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이 아닌 형식의, 그러니까 도박 빚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유흥 빚이나 이런 형태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분들이 채무를 질 수 있고 또 다시 경제적인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분들까지 매번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위원님.

○김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지원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경제로 복귀하지 못하신 분들의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여쭤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그런 섬세한 기준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김재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요. 채무의 내용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선행돼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실 그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때 채무 소각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7년 정도 됐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도 파산법 챕터 17인가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채무조정 또는 소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저희들도 자료나……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상류단에서 금융회사들도 이런 공적 채무조정, 거기는民間에서도 여러 변호사들이나 교섭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채무조정에 나서지만 그 금융회사들도 디렉터랑 그다음에 채무자랑 이용자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자 상환 같은 것들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나, 분할 상환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이런 콘택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입채권추심업자나 대부업체한테 기계적으로 나가면서 매입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잘된 사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일괄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으로는 기준이 꼼꼼해야 될 거고 그 기준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사례에 비추어 봐서 어떤 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경제에 복귀하셨고 어떤 분들이 다시 경제에 복귀하지 못했는지 사례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기준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빚을 냈는데 안 갚으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서 빚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빚을 탕감해 주는 접근도 있고 빚을 깎아 주는, 감면해 주는 접근법도 있고 그걸 대체해 주는, 연장해 주는 접근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데서 생기는 문제인데 빚을 탕감해 주다 보면 빚을 지고 안 갚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빚을 지고 7년을 견디면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빚 한 번 지고 7년을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잘 따져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 한 번 하려고 7년을 굽고 이럴리는 없잖아요. 환갑잔치 한 번 하려고 60년을 굽고 이런 사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빚에 내몰려서 빚을 갚을 수 없어 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고 또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을 거야 그리고 7년을 견뎌 볼 거야, 10년을 견뎌 볼 거야’ 이런 측면으로 어떤 방어논리가 작동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임위 전체회의 할 때도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났을 경우에 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환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재산이 있던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은폐하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은폐됐던 것이 확인됐을 때는 다시 그것을 추징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본적으로 7년 이상 된 사람들은 빚을 안 갚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7년을 견뎌서 빚을 탕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논리를 구성하면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걸로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제도에 접근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밖에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각의 과정은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자연 소각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예를 들면 아주 장기적으로 행방불명된 경우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장애가 와 가지고 누가 봐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서 면책 판결을 받은 경우 등등 이렇게 굉장히 여러 경우에…… 지금도 10년이 지나면 캠페인에서 매입한 것 중에서 10년이 지나면, 그런 심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 소각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게 1년에 한 4만 명 가까이, 5만 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거의 1년에 1조 가까이 해소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그런 자연 소멸의 과정과는 좀 다르게, 앞에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재난 때문에 확 와 가지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경우 아니면 정책의 실패 혹은 아무리 그 시점에 긍정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후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책적인 후과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긴 문제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재정이 거두는 게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은행이 잘못한 것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 또 은행이 그만큼 책임져 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지면서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채무가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면서 더 생기는 것들도 있고 계엄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관세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면 탁, 최근의 상황이 나빠서 그냥 기존의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7년 전, 10년 전의 것들이 꽉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정량적인 기준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논리적인 근거, 정책적 근거, 이론적 근거, 현실적 근거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면 저희도 경험적으로 보면 7년 이상 장기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그 중간 단계에서 각종 금융 폐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발급이 안 된다든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든가 7년간 그런 불이익 속에 있었던 분들이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런 소각 정책이라는 내용이 있을 건가에 대해 그 당시부터 예측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극소수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상환하지 않고 했던 분들을 저희가 걸러 내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극소수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하고 저희도 판단은,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채무조정을 하든 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을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일부라도 계속 상환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까지 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서민금융과장으로 하면서 뺏던 많은 분들,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

들은, 어떤 분들도 있느냐면 식당 같은 데 가셔 가지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갚는 것이 자기가 오히려 더 뜯떳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사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7년 이상 이렇게 상환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다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Kim은 결국 도덕적 해이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노력해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소각은 상환능력이 없는 부분, 그 부분과 연결해서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논의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제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사안을 먼저 하고 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거는 보류하고요.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징수당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해당 비용을 공단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의 표를 보시면 금년도 5월 말까지 3000건입니다. 3000건인데요 전체 예산표를 보면 12억 중에 홍보예산 1억을 제외하면 11억인데 11억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가 5500건입니다. 금년도 추세를 보면 연 7200건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그 차액인 1700건 곱하기 단가를 합쳐서 3억 5400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단 유영하 위원님께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부대의견 2건인데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정부 측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홍보비 5000만 원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홍보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원 배정돼 있던 것은 전액 소진된 상태라 하반기 추석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등을 위해서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 없는 연계 등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도 경찰 협조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회신받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24년 수사 의뢰 건수 363건에 대해서도 경찰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받은 게 한 178건 정도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

는가, 경찰청의 협조에 달린 문제라서. 다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테스크포스가 있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가 104명이 있고 담당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62명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업무 부담이 있고요. 지난해 사건 처리기간도 평균 20일 이내 걸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10일 이내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건 5000만 원 올리지요.

○柳榮夏 위원 이건 좀 올려 주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채무자대리 선임 정부안에다가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증액하는 걸로 여기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예산은 그렇게 하고, 아까 제한적 동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동의는 하는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해서 저희가 장담은 못 드린다는 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100% 사후관리.

○소위원장 이정문 어쨌든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니까 동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보안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개인티를 못 하니까 ‘보완하도록 노력한다’.

○소위원장 이정문 보완하도록 노력한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에 좀 전에 말한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수정의견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명호 수석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지금 이번 추경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의견이 5건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시효중단조치 제외 대상입니다—이걸 변경해서 무담보 장기채권 소각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약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연체기록 말소를 추진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상품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가운데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증액을 검토하고 현재 50%가 넘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를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의 재원 중 은행권 기부가 올해로 종료되므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정부 측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변경해서 무담보 장기 채권 소각 대상을 현실화하도록 매년 원활하게 시효완성 채권들의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이 내용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통해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연체기록 말소를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신용 사면은 신용질서의 골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된 연체기록 말소도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햇살론 상품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기준을 상향했을 때 원론적으로 대상층이 되는 이용자층은 넓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금원의 운영상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집중되게 되면 정작 소득수준이 더 낮은 대상층에는 서민정책상품의 공급이 축소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대의견을 받아들이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충실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가운데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증액을 검토하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를 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65억에서 560억을 이미 증액해 주셔서 925억이 확보돼서 저희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액은 일단 검토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여기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 등의 검토에 노력한다’로 해 주신다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 부대의견 동그라미입니다. ‘서금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불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의 재원 중 은행권 기부가 올해로 종료되므로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재원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은행권 출연금이 올해 종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요 재원을 불사금 예방 대출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출하기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예산 반영 등에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예산 당국과 충실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수용 의견입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예산 반영에 노력한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번에 1차 추경안 때 이미 혹시 반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의견으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거 반영됐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걸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정문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문구가 이미 들어간 내용이라 이거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도 지금 의견 들어 보니까 정부 측에서 삭제 의견 주셨는데 이거 삭제하는 거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할까요?

○이인영 위원 예, 빼요.

○소위원장 이정문 김현정 위원님, 삭제하는 거로?

○김현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세 번째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는 아까 후단 부분 사업구조 재설계의 검토를 ‘재설계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대위변제율 개선을 위한……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후단 부분은 문구를 바꾸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도 좀 전에 문구를 조정하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노력한다’로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정부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 동의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국 또 다시 돌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보훈부

것부터 하고 나중에 안 된 거 일괄로 할까요?

○**이인영 위원** 그 사이에 113만 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해서 그중에……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성이라든지 비율, 우려사항 이런 내용을 한번 또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 논의를 위하여, 다른 부처부터 심사를 하기 위해서요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국가보훈부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안은 동일하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34억 2900만 원, 1.3% 증가한 6조 4048억 9300만 원입니다.

개별 사업 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월 5만 원을 위해서 325억 8600만 원 증액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참전유공자분들의 고령을 고려해서 5만 원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올리면 옆에 같이 올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4·19공로수당하고 그리고 무공훈장을 받으신 수훈자가 계신데 그 세 영역은 같이 올라가게끔, 정액이 올라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무공 수훈자 7448명 해서 22억 4600 그다음에 4·19공로수당

이 260명 해서 7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3개를 합하게 되면 349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힘들다, 2개가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같이 올리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인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보통 4·19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분들까지도 연동해서 왔으니까 같이 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참전수당은 42만 원인가요, 현재?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45만 원입니다.

○**柳榮夏 위원** 45만 원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현재 45만 원입니다.

○**柳榮夏 위원** 현재 45만 원?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보통 물가변동률을 여기도 적용시키나요? 어떻게 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통상 그래도 이 3개의 영역은 저희가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정액으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물가변동률로 하지 않고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저희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처음에 참전수당 할 때 되게 약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년 전에 1만 원인가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 정부부터……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 더 올리면 50만 원이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 되면 내년쯤 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또 인상될 수 있어요, 지금 50만 원으로 올리면?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통상 이게 정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만 원을 올린다면 아마 예상컨대 이렇게 5만 원으로 가 줘야지 낮춰지면 수혜자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전수당이나 무공영예 수당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빤약하게 보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보훈부 전체 예산 중에 다른 데서…… 정부부처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부부처마다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분들의 예산을 올려 주고, 나중에 다른 예산도 있던데 그러면 다른 예

산이 좀 감액된다는 전제에서 이것을 올려도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만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건지.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영역들도 조금씩은 다 올라가야지 하나를 면줘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을 좀 전에 이인영 위원님 의견 주신 내용에다가 4·19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분들까지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금액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소위 자료대로 325억 8600만 원 증액이고요. 그리고 4·19공로수당은 7800만 원 그리고 무공 수훈자 영예수당은 22억 4600만 원, 각 5만 원 추가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정확하십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3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광복회 선양 행사는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8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격상 신규 사업 편성을 적절치 않기 때문에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사업 편성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유영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현실화를 위한 인건비 인상분 25억 9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현정·이정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국영웅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현승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월남전 참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이현승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중 광복회 학술원 사업 지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광복회 학술원 상근 근무자 인건비로 3500만 원 증액하자는 김용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혁 위원께서는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강민국 위원은 국가보훈부는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그리고 김남근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내용, 신장식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출간 언어 구성에 일본어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재일 동포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과 학술 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할 것 그리고 유영하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신규 사업 추가 편성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 사업 비용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할 것, 이정문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연내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이현승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사업 편성 2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8억 원 요청한 대로, 원안 그대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인건비 인상분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호국영웅회관 리모델링 13억 1000만 원 증액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월남전참전회의 아카이브 사업도 3억 원 증액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원 예산 3500만 원을 인건비로 옮기는 부분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인건비로 가는 부분이라서 타 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6년 예산에 학술원 상근 근무자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박상혁 위원님 등 부대의견을 주신 부분은 모두 다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2억 추가로 계상하셨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2024년도 결산내역서를 갖고 있거든요. 이 결산내역서 보면 독립영웅 아카데미1·2·3 아래 가지고 전부 얼마가 됐나면 94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청년 헤리티지 아카데미로 2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 한 1억 1500 정도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존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이걸 굳이 별도 예산으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도 납득이 안 갈뿐더러 금액도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 증액한 추가 금액이, 8000만 원 더 소요되는 소요내역서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2억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2억 부분의.

왜냐하면 6억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예산에서 안 돼서 그렇지만 이건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결산보고서 갖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이게 본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결산 내역에 보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독립운동 아카데미1 500만 원, 독립운동 아카데미2 7500만 원, 그러면 8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독립운동 아카데미 1400만 원, 그러면 다 합쳐 9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혜리티지 아카데미 2723만 332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2억이 증액돼서, 더군다나 별도 사업으로 계상시켰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두 번째, 왜 금액이 이 정도로 8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왔는지.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8000만 원, 더군다나 긴급하다고 추경으로 편성됐으면 그 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일단 2억 원 증액 주요 내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올해가 광복 80주년의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 따라서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저희가 독립영웅 아카데미 그다음에 청년 혜리티지 아카데미, 독립 후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고.

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좀 재편되면서 일부는 증액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내용은 신규 사업이 좀 생겼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올해가 80주년이다 보니까 사업 확장성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서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광복 80주년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앓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을 거의 다 반영시켜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기존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미 들어왔어야 돼요. 그때 6억은 분명히 들어온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반영을 못 시켜 드려서 이것은 당연히 반영시켜 드리는데 그때 전혀 없었던 말이에요. 없었고, 이미 기존에 학술연구 사업으로 했던 것을 별도 예산을 뽑아 갖고 별도 사업으로 한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예산심의할 때 수없이 와서 말씀을, 이게 광복 80주년에 필요해서 홍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예산 뭐가 필요하다고 죽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그때는 쪽 빠졌던 게 갑자기 광복 80주년이 기억이 나서 들어온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이미 기존에 학술사업으로 하던 것을 따로 떼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한다는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돈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잘 안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술사업에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됐는데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대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관님 지금 답변 주시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예산심의할 때 금액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더군다나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경은 정말 긴급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금방 주셔야 맞지 않아요?

지금 실무자 여기 누가 계세요? 실무자가 답변 주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단체협력담당관 강윤진입니다.

당시 6억이었던 게 2억이 추가된 부분은 후손들에 대한 인재 양성 사업이라 그래서 아까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예전에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에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멕시코·쿠바에서 후손들도 많이 왔고 국내외 유족들을 한 세 가지 사업으로, 그분들이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게 좀 더 강조가 돼서 3개 사업을 추가했는데 그 3개 사업 중의 하나는 국내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해외에 있는 사적지를 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 국내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내에 있는 사적지를 가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그 후손들을 초청하는 3개 사업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게 8000만 원이 추가된 내역이지요?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그게 2억인데 그 2억 중에, 아까 말씀 주신 일부 사업은 예전에 학술사업에 있던 사업을 재편성해서 애초에는 사업이 3개였는데 4개로 재분류하면서 좀 증액됐다고 2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는 게 이런 겁니다.

내역이 추가돼서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지난번 예산을 할 때……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예.

○柳榮夏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본예산에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갑자기 긴급 예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대신해서 이걸 답변드리는 게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원래 6억이라는 게 학술원을 운영할 때 반영이 되어 있던 수치고 광복회는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6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80주년이기도 하니까 이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원래 쓰던 6억 자체도 없어졌다가 그것만 복원시키는 데 지금 까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그 6억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광복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 입장에서는 해가 넘어가면서 더 운영비용을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다가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넣은 건데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어떤 사업인지도 다 압니다.

일단은 유영하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원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안에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2억이 마치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쪽에서도 뭔가를 더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도……

저는 국내에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사실 해외에 계신,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가셨다가 못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80주년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할 때, 광복회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받아 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저희가 자료를 한 장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 가능하시면 한번 좀 나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와서 나눠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눠 드렸으면…… 이게 사실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원래 하던 것이 왜 숫자만 늘어나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빨리 좀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유영하 위원님께서 그것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고.

차관님, 얘기하신 것 돌아가 보면 다른 법정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3500만 원을 원래 본예산에서 빼고 운영비로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러니까 지금 목적사업비 3500을 인건비로 전환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만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인건비 증액은 타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26년 예산에 그 상근 인건비를 태우는……

○**김용만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보시면 김현정 위원님하고 이정문 위원님이 얘기한 보훈단체 운영 현실화를 위한 인건비 인상분 25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훈부 예하에 있는 법정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관님이 동의하신 거고.

지금 광복회는 뭐냐 하면 제가 그냥 인건비만 3500만 원 증액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본예산에 있는 부분을 계정을 전환해서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한 건데 광복회에 지금 유영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양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둘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는 지금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왜 너희는 250만 원 받아?’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인건비를 줄 사람 자체가 없는 단체예요, 지금 광복회가. 거기애다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계끔 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 수준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의 3500만 원도 최저임금보다 못 해요. 그러니까 80주년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 나눠 주셔서 유영하 위원님이랑 제가 읊겠지만 제가 들여

다보니까 이 다양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자인 거고 다른 법정 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광복회가 인건비를 더 받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훈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이정문** 예,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예결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의 추경예산 의결하는 자체가…… 특위에서는 사실 정부 원안 베이스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통상?

○**소위원장 이정문** 예.

○**김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감액·증액 의견을 낸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대의견도 제가 죽 읽어 보니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점검을 철저히 한다’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 위원님들 개별 증액·감액 의견을 수용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위주로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광복회 예산 8억……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2억 감액 부분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독립운동 후손 네트워크 이 금액이 아마 한 7500만 원 추계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그라미 위주로 제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억으로 하는 부분 동의하셨고요. 유영하 위원 철회하셨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 현실화를 위한 인건비도 동의하신 거지요, 정부에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다음에 호국영웅보훈회관 동의하셨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소위원장 이정문** 월남전 참전 디지털 아카이브도 동의하셨고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다음에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하신 내용……

김용만 위원님,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김용만 위원** 차관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해서……

○**소위원장 이정문** 예, 차관님 의견.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도 김용만 위원님이 하신 내용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안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부대의견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위원장님, 부대의견은 유형이 비슷해서 비슷한 5개를 하나로 묶어서 1건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좀 전에 논의한 내용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5쪽입니다.

보훈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추경안에서는 2025년 진료비 집행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498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은 고려해서 2024년도 진료비 결산액 수준으로 반영해서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을 유영하 위원, 이정문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만 이 3억 2200만 원은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2024년도 진료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하면 67억 2500만 원이라는 것이 보훈부 계산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부대의견은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예산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편성 기준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라는 강민국 위원 등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국가보훈부는 병상 확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보와 연계된 지역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신장식 위원의 의견, 국가보훈부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라는 역시 신장식 위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오류가 있습니다. 3억 2200만 원을 67억 2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제가 이번 보훈병원 진료 건이 아니고요 아까 놓쳤던 건데 이 전에 3500만 원, 광복회 학술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설정했던 35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법정 단체와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 동의하신 부분에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시했던 그 3500만 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거꾸로 형평성을 따지자면 다른 법정 단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그 금액을 특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용만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그 수준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저희가 계산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특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사업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나 유영하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반영해야 된다는데 그게 계산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67억 25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유영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柳榮夏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부대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3건 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7쪽, 위탁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정부에서는 2025년 진료비 집행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34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보훈병원 진료에서 보신 것처럼 연내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진료비 결산액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70억 6100만 원 증액 의견을 유영하 위원, 이정문 위원께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계산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계산하면 88억 2700만 원 증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측·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라는 강민국 위원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동의하고요. 지금 수정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억 27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그러면 정부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 내용과 증액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8쪽,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입니다.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은 국내외 독립기념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강준현 위원께서는 2억 800만 원,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1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동의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준현 위원님께서 장애인부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서 저희는 2억 800만 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2억 800만 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안 중에 2억 800만 원, 강준현 위원님이 제시한 안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광복80주년기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광복80주년 기념 연극 4회 공연을 위해서 5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용만 위원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가칭 한국독립운동사대회 개최를 위해 역시 김용만 위원께서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두 가지 안 모두 다 저희 정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복80주년기념사업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기도 위원께서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0쪽,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입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 예상액 45억 증액 의견을 이현승 위원께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45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족 예상액 4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1쪽 국립서울현충원부터 22쪽 국립제주호국원까지 12건은 시설 보수공사 증액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감액 의견은 없고 크게 세 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기간이 긴 공사, 사전 허가 등 공사들에 대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절 공사로 인한 방문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김남근 위원의 의견, 그리고 국가보훈부 연내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정문 위원의 의견, 그리고 국립묘지에 대한 안전 및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정문 위원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부대의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지금 부대의견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12쪽부터 22쪽까지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22쪽까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용만 위원 한번 내용들을 보시고, 전부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괄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일괄 다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일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일괄 동의하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또 항목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2쪽부터 22쪽까지는 다 동일한 부대의견이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쪽, 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립현충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 지연에 따라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제가 아까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국립묘지 조성, 연천에 하는 거 지금 여기도 봉안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안당하고 봉안담만 돼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반공사가 시작되고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봉안묘에 대한 수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들은 적도 있고요. 국가가 임의적으로 봉안당과 봉안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자기가 마지막에 나는 내 유골이 땅에 묻히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 묘역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현충원하고 대전현충원은 봉안묘가 있지 않습니까, 만장이 됐지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봉안당과 봉안담만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천이 부지 면적이 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봉안묘에 대한 수요가 단 10%가 있든 5%가 있든 그분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역은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부대의견 달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최기도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마지막 부대의견 24쪽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현승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보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상담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상담창구 운영의 내역사업인 국민콜110 운영은 정부 대표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민콜110 상담직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콜110 상담직원 기본급 인상을 위하여 상용임금 5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병덕 위원님의 수정안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도 논의가 됐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110콜센터의 상담사 처우가 열악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기본급 인상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 부처 다른 콜센터하고 비교하면 현재 저희 권익위의 콜센터도 기본급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 나는 이유가 근속수당하고 또 민원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그 금액을 거의 대부분 다 근속수당과 민원수당 가산금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행정실을 통해서 제출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이어서 기본급여로 하는 것보다는 근속수

당과 민원수당으로 해서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정문**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柳榮夏 위원** 지난번에 저희 추경 할 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부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가 속기록 갖고 있는데 ‘다른 부처 콜센터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은 다소 부담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에 ‘타 부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안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에 비교 대상자가 경기도콜센터하고 다산콜센터였기 때문에 정부 부처랑 지방자치단체랑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다른 부처랑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른 부처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이 기본급이 비슷하다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수당 갖고는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신규 상담사의 기본급은 수당까지 포함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차가 지나가면 거기서는 근속수당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갖고 공부하신 분이 그러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그런 준비 자세 없이 국회에 출석하여 갖고 대충 답변하신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당시에는 기본급을 50만 원을 증액하는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인상안을 말씀해 주셔서 그 기본급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부처 콜센터의 기본급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근속수당에서, 저희가 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만 원 정도……

○**柳榮夏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한 5만~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증액되면 수당이 어느 정도 증액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월평균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올해……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랑 수당 차이가 5만~30만 원이라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그게 연차별로 저희가 대략 3만 원 정도 씩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구체적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기본급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근속수당과 민원수당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얼마가 차이 나냐 그러니까 한 5만~30만 원 정도 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1인당 얼마가 증액되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증액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더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증액해도 돼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은 대략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26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권익위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다소 열악하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조금……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근속수당 넣어 가지고 기재부랑 협상을 해야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본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기본급을 인상하는 안인데 기본급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콜센터하고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인상한다고 그래도 이게 인상되면 타 부처의 콜센터 직원들에 비해서는 수당이 많아지는 것은 맞잖아요.

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 돈 갖고는 이렇게 쉽게 안 해요. 입장이 그렇게 바뀌시면 안 됩니다. 저는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했을 때 기본급 갖고 물었습니까?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고 해서 올려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처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 가지고 보니까 다른 복지수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올린다, 그것도 한꺼번에 50만 원씩 올라간다 이걸 그냥 덜컥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 주고, 여기에 권익위에서 예산을 넣었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타 부서랑 자기들이 봤을 때 열악하면 그 부분을 벌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자기 50만 원 올려 가지고, 다른 부처보다 월등하게 올리면 그러면 타 부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쇄 파동 안 나겠어요? 공복 의식은 그럴 때 가지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만약 권익위가 1인당 50만 원 올라가게 되면 다른 타 부처도…… 아니, 지금 권익위가 50만 원 오르면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더 받다가 역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권익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수당 올려 달라고, 연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권익위에서 어느 부처가 5만 원이고 최대 많이 차이 나는 부처가 한 30만 원 된다니까 그 평균가를 보든지, 아니면 업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콜센터라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예산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올려 주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50만 원씩 올라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뻔히 팬찮다고 했다가 금방 이렇게 바뀌어서 오니까 제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柳榮夏 위원** 예, 그려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제가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의 7개월……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8월 달부터 해서 8, 9, 10, 11, 12, 5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월 50만 원이 되는데……

○**柳榮夏 위원** 50만 원 정도? 그러면 12개월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그걸 12분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부처하고 큰 틀에서는 근속수당이……

○**柳榮夏 위원** 그러면 만약에 4개월 동안 50만 원 이렇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수당이 지금 4개월보다 12개월로 나누면 줄어드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콜센터랑 비교하면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 부처의 콜센터……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떨까요? 지금 30만 원 차이가 나면, 지나간 것은 별론으로 치고 앞으로 8, 9, 10……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 3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나누기 해서 짧은 기간 더 주고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수당이라는 게.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30만 원씩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게 수정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실을 통해서 30만 원씩 계산한 구체적인 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3억 얼마 정도 되겠어.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柳榮夏 위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액을 3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남은 4개월이지요?

○**柳榮夏 위원** 5개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한 3억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민원 수당 가산금 한 5700만 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금액만 조정하고.

○**이인영 위원** 뒤에 꼬리표 붙였으니까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지금 30만 원씩 하면 근속수당으로는 3억 4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수당 가산금 5만 원이던 것을 5만 원만 더 증액을 하면 5700만 원이 돼서 총 3억 9700만 원이……

○**柳榮夏 위원** 3억 9700만 원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거의 4억 원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습

니다.

○**柳榮夏 위원** 하여튼 그건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금액 받아서 반영시키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3억 97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3억 9700만 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계산하신 내용 다 적으셨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비공개로 한번……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김상훈 위원** 지금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우리 당 간사하고 또 양당 간사하고도 조금 얘기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 놓고 모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했던 사업,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 탕감과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지금 또 논의를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회를 한 후에……

여야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결론이 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류했던 사업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6페이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기본 내용하고 부대의견까지 설명을 드렸고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까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금융위의 아까 그 4000억?

○**소위원장 이정문** 예.

○**柳榮夏 위원** 캠코 사장님 계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 김서중** 지금 사장이 아니고 부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오시라고.

○**柳榮夏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립니다.

부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 김서중**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업권별 분포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보시고 답변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업권별 분포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이 약 8조 8400억 갖고 있거든요, 인원은 한 66만 명 정도 되고. 공공기관 중에서 캠코가 갖고 있는 게 4조 6000억이거든요. 인원은 32만 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캠코가 연체채권을 5%로 받고 매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 자회사 만들려고 그러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한 5%, 그러면 이게 4조 6000억이니까 오히려 캠코가 자체 소각하면 한 200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거든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5%로 넘기면 한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냥 자체 소각하면 한 20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또 기업은행 등등 공공 금융기관들하고 일반 금융기관들하고 어쨌든 똑같이 시장가격에 의해서 평가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매입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금융기관이나 금융 공공기관은 어쨌든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의 개별 채권을 평가해서 4%, 5%, 6%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캠코는 한 편도 받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넘겨라, 캠코 재원으로 다 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틀의 금융기관들 형평성에도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柳榮夏 위원** 지금 금융기관의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4000억 이 부분 원금 탕감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 소신은 반대입니다마는 정부가 추구하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에 있어서—지금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이런 방법이 있으면 방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2000억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타 금융기관과의 협평성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해 가지고, 2000억을 줄일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글쎄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줄어드는 세금은 세이빙되고 나머지 갖고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결국 그렇게 되면 캠코의 부족한 자금은 캠코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이자를 내 가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결국은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은 유예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외에도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멸시효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립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柳榮夏 위원** 자체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자체 소각을 해 버리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일률적으로 캠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매입채권 4조 6000억 중에 지금 정확하게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뽑지 못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조금 더 레인지를 늘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예.

○**柳榮夏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넘겨서 2000억이 절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레인지를 늘리게 되면 지금 정부 측에서 추경으로 잡은 4000억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4000억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공공기관 보유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타의 채권에 대해서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소각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건지에 대한 절차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대상과 기준

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예결특위대로 정부 원안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가보훈부하고 권익위원회 합의된 부분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체회의는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좀 전에 김상훈 위원님 안 계실 때 유영하 위원님하고 김남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김남근 위원 아니,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 예산안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 절차에 있어서……

○柳榮夏 위원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대의견으로 달고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 금융기관 스스로가 먼저 채무조정해 가지고 소각을 하든 채무조정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채무조정을 하는 절차를 하는 건데 전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캠코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나 캠코 등이 스스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노력하도록 금융위나 이런 데서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걸로.

그리고 매입하는 것도 꼭 5%로 딱 획일적으로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6조가 아니라 더 많은 채권들을 매입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예, 공정가치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줘서 5%로 무조건…… 잘못하면 금융기관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융기관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채권도 5%에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획일적으로 5%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금융기관의 실정을 조사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을 더 많은 채권매입과 소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저희가 어느 부처는 통과시키고 보류하는 것도 예결소위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 측에서 금융기관의 출연 여부라든지 이런 것 더 확실하게 한 내용은 예결위 단계에서 더 보완해 주셔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예결소위는 정부 원안에 좀 전에 유영하 위원님이하신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남근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내용으로 하되 부대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밖에 부대의견 중에서 10페이지에 있는 신장식 위원님이 제출한 것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대의견 중에 한창민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도 정부에서 부동의하신 거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신용 회복 이것도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7페이지 그 부분도 어쨌든 부동의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게 아니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7페이지에 있는 강민국 위원님과 신장식 위원이하신 그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안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영하 위원님께서 한 그 말씀은 전문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산 관리공사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 중 처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가 부대의견이고 아까 처음에는 금융위에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 유영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상태라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인영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지금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아까 캠코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포함시킨다’를 ‘검토 후 반영한다’,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검토 후 반영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캠코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지금 윤한홍 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합의된 국가보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은 합의된 바대로 처리하고 배드뱅크 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정부 쪽에서 예를 들면 지원 절차, 대상 기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안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이라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뭔가 결론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결특위가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진도가 지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는 심사를 계속 진행할 거니까.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저희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결위로 넘겨야 사실상 효력을 발휘해서 하지 않을까요?

○**김상훈 위원** 예결특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건 통과하고 안 하는 것도 참 그런 상황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여당과 야당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 소소위 단계에

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김상훈 위원** 금융위에서는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해당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진행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일괄 매입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일괄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금융위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당 채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그냥 일괄적으로 정부가 탕감해 준다, 기준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매입 기구가 매입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저는 이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인영 위원** 아니, 일괄 매입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지요, 심사는 물론 합니다.

○**이인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김남근 위원** 매입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한다가 아니라 매입은 일괄해서 하고 소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다시 분할하거나 감면하거나 조정할 건 조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까 다른 나라 사례도 들었는데, 이래요. 금융위에서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개별 금융기관이 손실충당금의 형식으로 해서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하에 채권 소각 또는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소각·탕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손실충당금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채권 소각 또는 탕감된 채무자는 차후에 금융거래에 대한 페널티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정부가 무조건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걸 매입해서 배드뱅크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 외에도 각 금융기관들이 활발하게 사적 채무조정을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하자 이거지요. 캠코도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재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저도 우려가 좀 되는 게 금융위가 지금 장기연체채권 정리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심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별적인 신청 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셨는데 일괄 탕감을 다 하게 되면 말하자면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 소지가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것 검토는 다 된 건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소득하고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정보법에 추가적인 법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실물재산 정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소득 정보는,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위해서 국세청의 협조를 받는 그 권한은 캠코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금융재산 정보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저희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무자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을 때는 가장 신속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인 파장도 최소화되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정말로 없다고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준의 신용회복기구나 아니면 강화된 채무조정 비이클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유영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4조 6000억에 대한 부분도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캠코가 같은 기준으로 자체 소각 처리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농신보, 지신보, 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캠코에 관련돼서는 혼자 하겠다고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채무조정과 관련된 일 이, 저희들은 당장 올 4분기부터는 매입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이 부분을 끝내고 채무조정을 안착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걸 계속 지연시켜 가지고 일부는 어디서 하고 어떤 기관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혼란이 발생되는 일은 또 다른 비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는 있어서,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혈세에서 행정비용을 아낀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에 캠코랑 다시 실무적인 논의를,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잠깐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 매입해 오지 않으면 채권추심의 부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매입해 옴으로써 추심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실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드리냐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 연체채권자, 그동안 오랫동안 채권추심의 부담이 있었던 분들을 신속히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캠코 채권을 소각하면 거기는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캠코가 결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어느 쪽의 예산을 쓰는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은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건은 결국은 하나의 비이클에 다 가져와서 그걸 그냥 털어 가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말씀을……

○**김상훈 위원** 지금 여야 협의에 따라서 7월 4일 날 아마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것 같아요. 그 신속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는 7월 4일 날 아마 표결 처리될 거고 그때 의결될 텐데 우리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정부 측의 검토된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다만 이틀이라도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준비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청도 받지 않고 하겠다 그래 놓고 또 개인 신용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마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은 인청과 관련돼서 7월 3일 날 어차피 전체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체회의 하기 전에 예결소위에서 결론 내린 부분을 9시 반이나 9시든지 조금 더 일찍 개최해서 그때 결론 내리고 바로 전체회의로 들어가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강준현 간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오늘 전체회의 개최가 어렵겠다고 하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검토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채권을 그대로 그 금융기관에 남겨 두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익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매입해 오는 데 있어서 해당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추심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숨긴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는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을 발라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재매각, 다시 가져가게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을 소각 처리하는 문제라서 결국 그것은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이라 그렇게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보는 가져올 수 있는데 다만 금융 정보가 안 되는 부분은 신정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부대의견도 그렇게 주셨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이것은 좀 열어 놓고 양당이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논의가 상당히 오래됐고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김상훈 위원님은 일단 국가보훈부 예산과 국민권익위 예산은 의결을 하고 금융위원회 예산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지요?

○**김상훈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오늘 전체회의 안 열리는……

○**김상훈 위원** 전체회의 안 열릴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요? 전체를 의결해도, 아니면 일부만 의결해도 안 열립니까?

○**김상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보훈부 소관만 먼저 의결하고……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7월 3일 오전에는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7월 3일 오전에 의결합시다.

○**김상훈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7월 3일 오전에 의결을……

○**김현정 위원** 그러면 예결위는 어떡해요?

○**이인영 위원** 상임위 전체회의 하기 전에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결위 언제 마무리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예결위에서 3일 날 통과가 돼야 4일 날 의결, 언제까지 우리가……

○**김상훈 위원** 통과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정부안은 예결특위에서 다 검토되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는 거지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인정 전체회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저희가 인정 전체회의……

○**이인영 위원** 예결위 전체회의가 언제냐고요.

○**행정실장 박민호** 전체회의는 오늘, 내일 하고요. 모레부터 소위원회 회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소위원회 할 때 보내도 되기는 하니까, 어쨌든 지금 요청을 해 주셨으니까 정무위가……

○**이인영 위원** 3일 날은 있는데 2일에 있어요, 3일에 있어요?

○**소위원장 이정문** 3일 날 10시……

○**김상훈 위원** 3일 인정 하기 전에 하자 그러니까 9시 반이든 9시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9시 정도에 할까요, 그러면?

○**이인영 위원**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은 언제냐고요.

○**행정실장 박민호** 소위원회 회의를 해 봐야 의결이 나올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훈 위원** 7월 4일 날 방망이 두드린다 그러니까 7월 3일 날 오후쯤 결정되지 않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결위에서 공지한 일정은 오늘, 내일 전체회의를 하고……

○**이인영 위원** 그건 심사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체회의 종합질의를 하고 소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소위가 2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2일 날 의결할 수도 있고 3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전체회의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미정입니다. 소위 이후 일정은 미정입니다. 전체회의만 확정입니다.

○**이인영 위원** 전체회의는 언제로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일단 오늘, 내일 종합정책질의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그 뒤의 일정은 없습니다. 소위 의결을 해야 전체회의가 다시 가니까요. 소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늦어도 우리는 7월 3일 오전 10시 이전에 이 문제를 의결한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내일이든 모레든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김상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윤 위원장이 와 가지고 의결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라도 의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위원장 이정문** 예결위에서 의결도 하지만 결국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목요일 날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이 30분 정도 필요한 거지요, 예결소위하고 전체회의까지 작업하는 데?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소위를 9시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9시 정도예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김현정 위원** 여기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증액하는 것들을 소위로 못 보내지 않나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7월 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정무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오늘은 합의된 2건하고 금융위 관련된 1건은 그날 인정 전체회의 하기 전에 해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액과 관련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증액 의견을 그리로 보내지 못하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의결을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그 의견대로 하실 거면 열려면 내일이라도 빨리 열어야지 3일에 하는 것은 너무 늦지요. 지금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김상훈 위원** 그러면 간사 간에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 번 더 회의를, 왜냐하면 소소위가 열려도 증액 의견이 거기에 올라가야 거기서……

○**이인영 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밟아서 올려야 되는데 증액 의견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수요일부터 소소위를 밟으면 저희가 늦을 수가 있어서……

○**김현정 위원** 그리고 예결위의 일정이 유동적입니다. 원래 여야 간에 정책질의를 오늘 하루 하기로 했는데 하루 더 연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본회의가 3일에서 4일

로 연기하는 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3일 날 열 수도 있어요.

○김상훈 위원 4일로 확정됐어요.

○김현정 위원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확정된 적이 없어요.

○김상훈 위원 우리 의총에서 오늘 공지를 했습니다, 4일 날 통과시키는 걸로.

○김현정 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신 거고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하루 더 하시자 그래서 하루 더 한 거고 그래서 빨리 하면 3일 날도 열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3일 날에 다른 것도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3일도 열고 4일에 또 열어야 되잖아요.

○김상훈 위원 3일은 총리 인준 절차를 하는 게 주이고 그다음에 추경은 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4일 날 추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장실이랑 여야 간에 합의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장실 입장은 왜 3일, 4일 본회의를 두 번이나 여냐는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합의가 빨리 되면 3일 날 저녁에라도 열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아니어서 하게 되면 조금 전의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하신 것처럼 금융위 추경 관련된 것을 하실 거면 내일 해야지 3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추가되는 게 빠질 수가 있어요, 증액되는 게.

○김상훈 위원 어차피 화요일, 수요일 정책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위가 열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질의 이틀 빼면……

○소위원장 이정문 정책질의가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김상훈 위원 소위는 화·수·목요일 열릴 것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수요일 날 한다고요, 수요일 날.

○김상훈 위원 예?

○이인영 위원 오늘하고 내일.

○소위원장 이정문 오늘하고 내일이 정책질의입니다.

○이인영 위원 월, 화가 정책질의니까 수요일 날 소위 들어가면……

○김상훈 위원 소위는 수요일.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저희는 목요일 날 하게 되면 늦을 수 있다는 거지요, 소소위가 이미 열린 상태에서 하니까.

○김상훈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김현정 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 열면 안 되는 이유는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훈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좀 빨리 해서……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와 관련된 예산이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나머지 2개 부처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하고 이 부분은……

○행정실장 박민호 금융위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의결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결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내일 오후에 우리가 예산소위를 소집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양당 간사님하고 조율해서, 또 전체 회의도 열어야 되니까요 저희 예산소위하고……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무위는 소위를 언제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할 것은 합의했으니까 전체회의 때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이인영 위원** 그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게 지금 얘기한 게 여기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예산특위 전체회의에 증액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못 하더라도 예산소위에서라도 의결이 되면 그거라도 감안해서 할 텐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예산소위는 열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어쨌든 끝나고 나서 제가 양당 간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일 다시 예산소위는 열고, 당연히 저희가 열면 되는데 전체회의까지 열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합의된 것은 특위에 알려 주면 되지 않나요? 국가보훈부하고 권익위원회가 전부 증액 그건데 이렇게 해서 합의됐다 그러고……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그게 전체회의를 못 거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못 보내니까요.

○**김상훈 위원** 일단 마무리 진행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한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남근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유영하 이인영 이정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복지증진국장 최병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문화정책관 나치만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의료심의관 한상균
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광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센터장 임진홍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부사장 김서중
기획조정실장 한덕규
새출발인수운영처장 양근영